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7-73호
2017. 9. 29.(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조 례(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43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조례 제1244호)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245호)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1246호)18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47호)32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48호) ..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조례 제1249호)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250호)5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51호) ...1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52호) ·111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40호)1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규칙 제841호) ·122

훈 령(1)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19호) ..142

차 례

고 시(3)

- 대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징골, 이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7-186호)144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문평1호선) 실시계획 고시(고시 제2017-187호)148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7-188호)153

공 고(8)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7-729호)154
-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공고 제2017-751호)155
- 수령 대상자 거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7-753호)15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755호)15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756호)159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문평1호선) 보상계획 열람공고(공고 제2017-759호)160
- 도시계획시설사업(만남어린이공원 조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
(공고 제2017-760호)167
- 공시송달(공고 제2017-761호)169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4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대덕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제7조).
- 위원의 임기와 관련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임규정이 없더라도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제8조).
-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망은 당연상실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적절한 용어를 삭제함(제9조).
-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제10조제5항).
-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제1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4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
전광역시 대덕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
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만두레”란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모임체를 말한다.
2. “복지수요자”란 복지만두레의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복지공급자”란 복지수요자를 보호·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만두레의 조직·운영 및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4. 그 밖에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만두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동 복지만두레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
2. 복지만두레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동 복지만두레 회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만두레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와 복지만두레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및 사기진작 등) ① 동장은 복지만두레가 복지수혜자를 위해 활동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 실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하고 복지만두레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해 연 1회 복지만두레의 날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 위원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희망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중추적 역할 수행하고 있는 복지만두레 운영지원을 위해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 설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조례” 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함.
-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기 쉽게 정의함(제2조).
- 복지만두레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복지만두레 대덕구협의회 및 복지만두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 복지만두레 사후관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4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
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

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는 소재지를 말한다)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용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

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

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기금조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자활기금 설치 목적에 적합 하게 기금 용도 및 조문을 정비 하는 등 자활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활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정함(제3조).
-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제4조).
- 자금 대여 이자율을 조정함(제6조).
- 신용보증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제9조).
- 자활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 기금 지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 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4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
업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70-6 일원에 새뜰마을사업
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3인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주(대덕구 관외 지역의 거주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

- 호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3.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단독가구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할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거주기간) ①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입주계약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하여 입주자를 입주시킬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인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②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등 조치)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 보수) 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청장과 임차인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파손·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구청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공가의 전용부분은 구청장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보험 가입) 구청장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 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동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정화조 오물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제14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수령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 (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배 점	비 고
총 계	100	
1. 가구원수 (20점)	3인	20
	2인	15
	1인	10
2. 가구주 연 령 (20점)	65세 이상	20
	60세 이상~65세 미만	18
	55세 이상~60세 미만	16
	50세 이상~55세 미만	14
	50세 미만	12
3. 대덕구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
	7년 이상~10년 미만	18
	5년 이상~7년 미만	16
	2년 이상~5년 미만	14
	6개월 이상~2년 미만	12
4. 가구원 형 태 (20점)	유형 3	20
	유형 2	15
	유형 1	10
5. 기 타 (20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0

[별지 제1호서식]

연 번		입주신청서 및 조사·접수 산정표 (제5조제1항 관련)				
입 주	성 명	신청자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주)			장애인(장애수당)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자2		구 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신청자2			한부모가족	
주 소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전화번호						
가구원수			대덕구 계속 거주기간	년 월(~)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 분		배점	확인내 용	득점	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	
총 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 1~3급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가구원수 (20점)	3인 가구	20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인 가구	15				
	1인 가구	10				
가구주 연 령 (20점)	65세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거세입자 () 재해이재민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60세 이상~65세 미만	18				
	55세 이상~60세 미만	16				
	50세 이상~55세 미만	14				
대덕구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7년 이상~10년 미만	18				
	5년 이상~7년 미만	16				
	2년 이상~5년 미만	14				
가구원 형 태 (20점)	유형 3	20			담 당 자	동 장
	유형 2	15				
	유형 1	10				
기 타 (20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0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7조제1항 관련)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70-6 일원

건 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호

2. 임차기간 : 위 표시 임대주택의 임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납부장소
원	원	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

4. 입주자 관리

- ① 구청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퇴거 등 조치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도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첨부 :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년 월 일

임대인(위탁자) 주 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수탁자) 주 소 :

성 명 : (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제7조제4항 관련)

임대주택 _____ 호

구분	시설내용	상 태		비고	구분	시설내용	상 태		비고
		양호	불량				양호	불량	
현관문	출입문				욕실 (화장실)	욕실 및 샤워			
	도어록 및 열쇠 분전함					타일			
	차임벨					점검구			
				배수구					
방	출입문				주방	덕트문			
	도어록 및 열쇠					싱크대			
	도배					레인지후드			
	장판					수도꼭지			
보일러실	보일러					배수구			
	온수탱크								
욕실 (화장실)	출입문				그 밖의	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			
	도어록								
	변기, 세척기								
	거울								
	휴지걸이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제9조제3항 관련)

임대주택 _____ 호

계약자 (세대주)	성 명					보호구분 (해당에 ○표)	
	생년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장애수당) () • 저소득 독거노인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의 () 	
	직 업						
	학력(학교명)						
	전화 번호	주택					
휴대 전화							
가족 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학교명)	월 소득	장애 또는 질병	
특이 사항							
구성원 (사진)				구성원 (사진)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 (제11조제4항 관련)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			담당자	담당	과 장	결 재
호수	보수일자	보 수 내 용	수 량	단 가	공사금액	비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대주택에 대한 목적, 정의, 입주자격 등에 대하여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임대주택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입주자 관리, 시설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47호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입법 활동에”를 “입법활동과”로, “처리 한다”를 “처리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통할”을 “총괄”로, “지휘·감독 한다”를 “지휘·감독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를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로 한다.

제5조 중 “두는 사무 직원”을 “근무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회사무 처리”를 “의회 사무처리”로, “대덕구청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 “요청할수”를 “요청할 수”로 한다.

제7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사무분장등”을 “사무분장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 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4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
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보

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본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한”을 “인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원 당해년도”를 “해당연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상당한 금액”을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원 당해년도”를 “해당연도 시의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제4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경우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된때에는”을 “된 경우”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의원”을 “해당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망일로부터”를 “사망일부터”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장애나”를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로, “날로부터 6월이내에”를 “날부터 6월이내에”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보상금의 지급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일시불로”를 “일시금으로”로, “구좌에”를 “계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회 구성)”을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과 위원 4인”을 “1명과 위원 4명”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원 1명
2. 대덕구 실·국장 1명

제9조제2항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으로, “경우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보상금지급대상”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을 때에는”을 “났을 때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날로부터 15일이내”를 “날부터 15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의거”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중”을 “대덕구 소속 공

무원 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심의회회의 수당등)”을 “(심의회회의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한
보상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청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p>「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p>				
<p>첨부서류</p> <p>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p> <p>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p> <p>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직 인</p>				
대전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리기한
제 호				즉 시
보상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의결과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p>「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직 인</p> <p>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를 정비함(제5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 함(제1조부터 제15조까지).
-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시 첨부서류 중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함(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4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수립·시행하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지역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구”라 한다)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3. 도시계획, 시각, 공간, 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의 용역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② 제6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6.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7. 구청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8. 구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9.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

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및 심의·자문 등) ①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해당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의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중 공공디자인적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7조 관련)

1. 검토대상 공공시설물등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지하철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행 가로, 자전거도로, 보호펜스,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철도부속 포함), 방음벽,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편의 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파고라,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키오스크, 공중전화, 인포메이션부스,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시계탑 등	
공급 시설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등	
녹지 시설물	가로수 보호대(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배수구덮개, 가로 녹지대 등	
안내 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문화재 설명 표지판, 사설안내표지, 지하철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 등	
그 밖의 시설물	옥외전광판, 상징조형물, 아치, 벽화, 하천시설물, 수경시설 및 그 밖에 위의 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 ~ 안내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2. 기본원칙

- 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 나.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 다.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 라.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 마.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3. 검토사항

-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체성 확립 및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 조항으로 정함(제1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및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 정함(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5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

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 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

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으로 공정한 방법,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회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자율관리협정 체

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회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회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회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회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

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부터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간판의 규격 높이 6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

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계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계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위탁

기간을 연장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

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

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 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질서위반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

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징수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

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사업

제3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 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p>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p> <p>1) 면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p>2) 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p>3) 면적 10㎡ 이상 2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p>4) 면적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p>20만원</p> <p>30만원</p> <p>40만원</p> <p>45만원</p> <p>55만원</p> <p>65만원</p> <p>75만원</p> <p>85만원</p> <p>95만원</p> <p>110만원</p> <p>130만원</p> <p>145만원</p> <p>165만원</p> <p>185만원</p> <p>200만원</p> <p>10만원을 더한 금액</p> <p>* 500만원 이하</p>
<p>나. 돌출간판</p> <p>1) 면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p>20만원</p> <p>30만원</p> <p>40만원</p>

- 4m ² 이상 5m ² 미만	49만원
2) 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 5m ² 이상 6m ² 미만	55만원
- 6m ² 이상 7m ² 미만	65만원
- 7m ² 이상 8m ² 미만	75만원
- 8m ² 이상 9m ² 미만	85만원
- 9m ² 이상 10m ² 미만	95만원
3) 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 10m ² 이상 12m ² 미만	110만원
- 12m ² 이상 14m ² 미만	130만원
- 14m ² 이상 16m ² 미만	150만원
- 16m ² 이상 18m ² 미만	170만원
- 18m ² 이상 20m ² 미만	190만원
4) 면적 20m ²	200만원
- 20m ² 초과하는 면적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m ² 미만	
- 0.5m ² 미만	30만원
- 0.5m ² 이상 1m ² 미만	35만원
- 1m ² 이상 2m ² 미만	40만원
- 2m ² 이상 3m ² 미만	48만원
2) 면적 3m ² 이상 5m ² 미만	
- 3m ² 이상 3.5m ² 미만	55만원
- 3.5m ² 이상 4m ² 미만	65만원
- 4m ² 이상 4.5m ² 미만	80만원
- 4.5m ² 이상 5m ² 미만	95만원
3) 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 5m ² 이상 6m ² 미만	110만원
- 6m ² 이상 7m ² 미만	130만원

- 7㎡ 이상 8㎡ 미만	150만원
- 8㎡ 이상 9㎡ 미만	170만원
- 9㎡ 이상 10㎡ 미만	190만원
4) 면적 10㎡	20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p>5) 면적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p style="text-align: right;">28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29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30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0만원을 더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 500만원 이하</p>
<p>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p>1) 선전탑, 아치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p>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p style="text-align: right;">3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5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6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7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75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5만원을 더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 500만원 이하</p> <p style="text-align: right;">3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6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p>
<p>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p>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p>2) 교통안내소</p>	<p style="text-align: right;">3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5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6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7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8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5만원을 더한 금액</p> <p style="text-align: right;">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p>

<p>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 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 안내도</p> <p>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p> <p>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p>	<p>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p> <p>1) 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p>2) 그 밖의 교통수단</p> <p>가) 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p>나) 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p>다) 면적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초과하는 면적 1㎡당 	<p>150만원</p> <p>160만원</p> <p>10만원을 더한 금액</p> <p>10만원</p> <p>20만원</p> <p>29만원</p> <p>35만원</p> <p>45만원</p> <p>50만원</p> <p>5만원을 더한 금액</p>
<p>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
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2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4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2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p>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p>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p>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p>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p>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p> <p>카. 창문 이용 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p>타. 현수막</p> <p>1) 일반현수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p>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파. 벽보(1건)	5,000원
하. 전단(500매마다)	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청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28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이상 2㎡ 미만 		49만원
<p>다) 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58만원 67만원 79만원
<p>라) 면적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p>나. 현수막</p> <p>가) 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p>나) 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p>다) 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p>라) 면적 1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8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50천원</p>
<p>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p>법 제20조제1항제2호</p>	<p>67만원</p> <p>117만원</p> <p>217만원</p> <p>400만원</p>
<p>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p>법 제20조제1항제5호</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p>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p>법 제20조제2항</p>	<p>30만원</p> <p>50만원</p> <p>100만원</p>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 번	⑲ 비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유 선 번호 주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별지 제2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대전광역시 대덕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격기한(.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전시 대덕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 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정비 및 목적조항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함(제1조).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 등의 공공 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전자계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제6조).
-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부과 사항 삭제함(제9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변경 및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안전점검 위탁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제22조).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감면 조항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함(제25조제7항).
- 교육위탁 등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반환규정에 대해 명시함(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 상위법에서 정한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및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관련한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 등에 대한 교육 관련한 별표 2, 수수료와 관련한 별표 3, 별표 4,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한 별표 6을 권고안에 따라 정비함(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5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대전광역
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의 관리”를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
로 한다.

제2조 중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를 “공용의 청사(대전광역시 대덕
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등)”로, “청사건립기금”
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재산의 매각대금

제5조제1호 중 “청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을 “(준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의 범위를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 공용청사의 범위를 정함(제2조).
- 기금의 조성에 대한 재원을 추가함(제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로 한다.

제1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담당”으로, “교통안전업무”를 “교통안전 업무”로 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범위 안”을 “범

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발굴한 정비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촉위원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제3조).
- 위원의 임기와 관련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임규정이 없더라도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제4조).
- 위원회 소집의 정례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함(제6조).
-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제1조 부터 제9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4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력경쟁임용시험에”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력경쟁임용시험의”를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의”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를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통산하여 5할을 인정하여 산입하되,”로,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
다.”를 “범위 내에서 이를 산입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
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며, 재직기간 중 영 제33조제2항 또는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대상으로 통산하여 5할을 인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특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별표 13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의3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4조제10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제24조제2항, 제25조의3 관련)

구분		상당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군무원		4급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교육공무원	대학교원 (전문대학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및기 타교육 공무원	유초·중등 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적용 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7~10호봉 전문대학: 9~12호봉	대학:6호봉이하 전문대학:8 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지방)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지방)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	“마급”으로서 “나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국가)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국가)		
	시간 선택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지방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정직 공무원 등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제14조).
- 특정직 공무원 등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인정 범위를 정하고, 별표 13에 전문임기제, 교육 공무원 등을 규정함(제24조 및 별표 13).
-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별표13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함(제25조의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4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할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거나 협의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협의체에서 인정하는 경

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용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대출금액은 기업 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 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금의 대하)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대하 할 때에는 대하 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총 사업비	지원액	자체 부담액	후원금	비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별첨”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총사업비	지원액	자부담	자부담 방법	비고

사. 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2. 생년월일(법인번호) :
3. 주소 :
4. 연락처 :
5. 사업명 :
6. 사업목적 :
7. 사업개요 :
8. 소요경비재원 :

총사업비	신청액	자체부담액	후원금	비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별첨”			
신청계좌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대여금액 : 금 원(₩)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단체)를 00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지원금액 : 금 원(₩)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단체)를 00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사업기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구 분	사업비 집행내역				비 고
	총사업비	기금지원액	자부담	후원금 등	
계					
집행액					
잔 액					

5. 참고자료
 -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	예 금					지출		잔액	비고
	재원	종류	금액	이율	기간	적요	금액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	적요	지급처	지급액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				보증인	
성명		전화번호		성명	
주소				주소	
생년월일				생년월일	
대여액		용도		성명	
대여일시				주소	
상환개시 (만기)일	20 . . . ~ . . .			생년월일	
상환방법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고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구분	회수 정수	상 환						원금 잔액	취급자 (인)
		수납일	계	원금	이자	연체금	연체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									
119									
1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활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활기금 지원 신청, 결정,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자활기금 지급 및 대출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7조까지)
- 기금반환 통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9조까지).
-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 사업계획, 예산 변경 및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자활기금관리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제16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1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대전
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부조직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함 (제1조).
 - “국민안전처(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변경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 징골, 이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덕구 삼정동 및 장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징골, 이촌)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불합리한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총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1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일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	4,639,192.5	150개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총계		151개소	4,639,192.5	
동구		40 개소	1,205,1521.5	
중구		7 개소	220,196	
서구		25 개소	598,904	
유성구		62 개소	2,149,644.2	
대덕구		17개소	465,296.8	
기정	대덕구1. 비래골	대덕구 비래동 430일원	31,125.1	
"	대덕구2. 산중골	대덕구 읍내동 82-3일원	20,730.0	
"	대덕구3. 옥골	대덕구 장동 326-12일원	98,954.6	
"	대덕구4. 징골	대덕구 장동 86일원	37,036.0	
"	대덕구5. 새뜸	대덕구 장동 789일원	14,634.3	
"	대덕구6. 산디	대덕구 장동 630일원	23,714.6	
"	대덕구7. 하산	대덕구 용호동 181일원	35,804.5	
"	대덕구8. 벌말	대덕구 미호동 194일원	42,828.0	
"	대덕구9. 새터말	대덕구 미호동 270-2일원	22,417.9	
"	대덕구10. 숫골	대덕구 미호동 308일원	23,337.7	
"	대덕구11. 덕골	대덕구 삼정동 240일원	9,690.0	
"	대덕구12. 강촌	대덕구 삼정동 334일원	23,884.6	
"	대덕구13. 이촌	대덕구 삼정동 32일원	14,867.1	
"	대덕구14. 심곡	대덕구 이현동 344일원	15,986.7	
"	대덕구15. 배고개	대덕구 이현동 205일원	28,497.3	
"	대덕구16. 새말	대덕구 갈전동 241일원	20,925.4	
"	대덕구관통1. 들말	대덕구 와동 175-5일원	863.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대덕구 4. 징골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장동2	8	국지도로	299	중로3-167	장동90	일반도로		2006-07-20	
변경	소로	3	장동5	6	국지도로	374	장동171-3	장동90	일반도로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장동2	소로 3-장동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 및 선형변경, 노선연장 - 폭원 : 8m → 6m (감 2m) - 연장 : 299m → 374m (증 7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락지구(정골지구) 내 장기미집행시설로 도로개설에 따른, · 지역주민 의견(건축물, 지장물 간섭을 최소화) 반영 및 현황도로를 활용한 도로개설(폭원 및 선형 변경)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장동3 주차장	장동168	700	증) 39	739	2006-07-20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동3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증가 - 700㎡(기정) → 739㎡(변경) (증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과 연결해있던 소로2-장동2호선의 폭원감소 및 선형변경에 따라 이격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주차장이용 편리성 감소에 따른 변경 · 면적 변경 없는 변경이나 결정조서 상 면적 오기 정정

2) 대덕구 13. 이촌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삼정2	6	국지도로	295	삼정산9-3	삼정21-2	일반도로		2006-07-20	
변경	소로	3	삼정2	6	국지도로	337	소로3-삼정1 (삼정산9-3)	삼정20-1	일반도로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삼정2	소로3-삼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 연장 : 295m → 337m (증 4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설완료된 도로이나 종점부 부근 삼정동 20-1번지, 21-1번지의 맹지가 발생됨에 따라 노선연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조서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고시	소로	3	장동5	6	국지도로	374	장동171-3	장동90	일반도로	
기승인	소로	2	장동2	8	국지도로	299	중로3-167	장동90	일반도로	
금회승인	소로	3	장동5	6	국지도로	374	장동171-3	장동90	일반도로	노선연장
결정고시	소로	3	삼정2	6	국지도로	337	소로3-삼정1 (삼정산9-3)	삼정20-1	일반도로	
기승인	소로	3	삼정2	6	국지도로	295	삼정산9-3	삼정21-2	일반도로	
금회승인	소로	3	삼정2	6	국지도로	337	소로3-삼정1 (삼정산9-3)	삼정20-1	일반도로	노선축소

나.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기승인	금회승인		
변경	-	장동3 주차장	장동168	739	700	739	2006-07-20	

3. 관계도서(도면포함) : 게재생략. 끝.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문평1호선) 실시계획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산업단지 내(소로3-문평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04-2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나. 사업의 명칭 : 산업단지 내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사업면적 : 7필지 509.6m²

나. 사업규모 : 도로개설 L=81.6m, B=6.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고시일 ~ 2018. 12. 31.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공사 완료 후 해당 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 :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건설과에 비치)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사 업 명 : 산업단지 내 도로개설공사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사항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7필지)				33,588.2	509.6					
1	대덕구 문평동	123	장	28,791	28.7	서울 강남 테헤란로1 ***(역삼동)	한국 ***(주)			
2	대덕구 문평동	99-3	도	340.0	101.7	대전 대덕구 문평동 9*-*	(주)인쇄 ***			
3	대덕구 문평동	104-2	도	115.0	115.0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주)			
4	대덕구 문평동	103	장	4,066	24.4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주)			
5	대덕구 문평동	108-10	전	223.0	223.0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6	대덕구 문평동	108-7	도	5.0	5.0	대전 동구 대전로 68 *--*(인동)	이**			
7	대덕구 문평동	76-4	잡	48.2	11.8	대전 동구 대전로 68 *--*(인동)	이**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사 업 명 : 산업단지 내 도로개설공사

연 번	소재지	지 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사항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대덕구 문평동	123	콘크리트 포장	T=200mm	21㎡	서울 강남 테헤란로1** (역삼동)	한국*** (주)			
2	대덕구 문평동	123	차량방호 시설	철재	11m	서울 강남 테헤란로1** (역삼동)	한국*** (주)			
3	대덕구 문평동	123	L형측구		14m	서울 강남 테헤란로1** (역삼동)	한국*** (주)			
4	대덕구 문평동	99-3	콘크리트 포장	T=200mm	99㎡	대전 대덕구 문평동 9*-*	(주)인쇄***			
5	대덕구 문평동	99-3	차량방호 시설	철재	13m	대전 대덕구 문평동 9*-*	(주)인쇄***			
6	대덕구 문평동	99-3	L형측구		8m	대전 대덕구 문평동 9*-*	(주)인쇄***			
7	대덕구 문평동	104-2	콘크리트 포장	T=200mm	83㎡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8	대덕구 문평동	104-2	L형측구		20m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9	대덕구 문평동	104-2	L형옹벽	H=2.0m	28m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10	대덕구 문평동	104-2	블럭담당	H=1.8m	28m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11	대덕구 문평동	104-2	전선케이블		28EA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12	대덕구 문평동	103	콘크리트 포장	T=200mm	24㎡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13	대덕구 문평동	103	출입문		1EA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14	대덕구 문평동	103	블럭담장	H=1.6m	10m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연 번	소재지	지 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사항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5	대덕구 문평동	108-10	콘크 리트 포장	T=200mm	24㎡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16	대덕구 문평동	108-10	블럭 창고		1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17	대덕구 문평동	108-10	계량기		1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18	대덕구 문평동	108-10	상수도		1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19	대덕구 문평동	108-10	우수 받이		3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0	대덕구 문평동	108-10	U 형측 구	300mm×200mm	14m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1	대덕구 문평동	108-10	웬스줄 기초		13m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2	대덕구 문평동	108-10	EG 웬스	H=2.2~2.4m	63m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3	대덕구 문평동	108-10	화확 탱크	(기초포함)	3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4	대덕구 문평동	108-10	콘테 이너	3m×6m	1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5	대덕구 문평동	108-10	L 형측 구		1m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6	대덕구 문평동	108-7	콘크 리트 포장	T=200mm	3	대전 동구 대전로 68 *-*(인동)	이**			
27	대덕구 문평동	76-4	콘크 리트 포장	T=200mm	12	대전 동구 대전로 68 *-*(인동)	이**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 여 고시일	도 로 명 주 소 부 여 사 유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도 로 명 고 시 일)	비 고
비래동 122-16	비래동로15번길 51	2017.9.29.	건축물신축	비래동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831-3	덕암로136번길 22	2017.9.29.	건축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중리동 372-29	중리북로37번길 19	2017.9.29.	건축물신축	중리북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394-14	옛신탄진로 205	2017.9.29.	건축물신축	구신탄진으로 가는주요도로로서역사성반영	
상서동 425	상서당길 65	2017.9.29.	건축물신축	윗마을 서당이라는 웃서당,상서당자연마을 명에서 유래	
신탄진동 124-32	신탄진동로35번길 84	2017.9.29.	건축물신축	신탄진동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중리동 368-24	중리로64번길 1	2017.9.29.	건축물신축	중리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106-5	비래서로9번길 53	2017.9.29.	건축물신축	비래서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2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읍내동 22 번지	18m ²	1.25m	29.86m	정용구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38조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 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I.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1. 공시기준일 : 2017년 6월 1일
2. 대 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110번길 66 (오정동 68-11번지) 외 95호
3.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4. 열 략 장 소 : 대덕구청 세무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http://tax.daejeon.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 청 기 간 : 2017. 9. 29. ~ 10. 30.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 청 방 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대덕구청 세무과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제출
4. 결 과 통 지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수령 대상자 거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갈전동 고릿골천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코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수령 대상자 거소불명에 따른 보상계획 및 협의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안성근 외 2인
4.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전동 485-1번지 외 1필지
 - 나. 물 건 : 해당없음
5.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장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042-608-5252)
 - 나. 열람기간 : 2017. 09. 29. ~ 2017. 10. 13. (15일간)
 - 다.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붙임 토지조서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이의가 없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편입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갈전동	485-1	485-3	답	2,218	27	신탄진읍 갈전리 22 4	안성근	
			485-4			14			
2	"	490	490-1	답	1,392	225	-	변영준	
3	"	492-1	492-2	답	772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8-2 청솔아 파트 2017동 510	변범배	
	이		하		여		백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60호	전선관 매설	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 본부	전선관	아스팔트 보도블럭	14.0	11.2
		비래동 4-3번지 일원 2개소				14.0	11.2

2. 공사기간 : 2017. 09. ~ 2017. 10.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61호	전선관 매설	계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전선관	아스팔트 보도블럭	142.0	171.3
		오정동 11-1번지				142.0	171.3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문평1호선)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산업단지 내(소로3-문평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물건내역의 착오, 누락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산업단지 내(소로3-문평1호선) 도로개설공사
- 나.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04-2 일원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L=81.6m, B=6.0m
- 라. 사업기간 : 2017. 고시일 ~ 2018. 12. 31.
- 마. 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 보상대상 : 소로3-문평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권 일체

3.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열람 및 이의 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7. 9. 29 ~ 10. 13.(금) / 14일 이상

-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 042-608-5213)
-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대덕구청 건설과에 서면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7년 10월부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협의기간, 장소,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후 보상실시)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입금)

- 다. 보상액산정 :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통지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등기 → 보상금 계좌입금

마. 감정평가사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덕구청 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 가. 편입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 개별통지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나. 추후 보상 진행은 예산 및 기타 사정에 의해 협의 순서대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열람내용에 일부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붙임 : 1.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 1]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사 업 명 : 산업단지 내 도로개설공사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사항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7필지)				33,588.2	509.6					
1	대덕구 문평동	123	장	28,791	28.7	서울 강남 테헤란로1 **(역삼동)	한국 *** (주)			
2	대덕구 문평동	99-3	도	340.0	101.7	대전 대덕구 문평동 9*-*	(주)인쇄 ***			
3	대덕구 문평동	104-2	도	115.0	115.0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주)			
4	대덕구 문평동	103	장	4,066	24.4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주)			
5	대덕구 문평동	108-10	전	223.0	223.0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6	대덕구 문평동	108-7	도	5.0	5.0	대전 동구 대전로 68 *-(인동)	이**			
7	대덕구 문평동	76-4	잡	48.2	11.8	대전 동구 대전로 68 *-(인동)	이**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사 업 명 : 산업단지 내 도로개설공사

연 번	소재지	지 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사항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대덕구 문평동	123	콘크리트 포장	T=200mm	21㎡	서울 강남 테헤란로1** (역삼동)	한국*** (주)			
2	대덕구 문평동	123	차량방호 시설	철재	11m	서울 강남 테헤란로1** (역삼동)	한국*** (주)			
3	대덕구 문평동	123	L형측구		14m	서울 강남 테헤란로1** (역삼동)	한국*** (주)			
4	대덕구 문평동	99-3	콘크리트 포장	T=200mm	99㎡	대전 대덕구 문평동 9*-*	(주)인쇄***			
5	대덕구 문평동	99-3	차량방호 시설	철재	13m	대전 대덕구 문평동 9*-*	(주)인쇄***			
6	대덕구 문평동	99-3	L형측구		8m	대전 대덕구 문평동 9*-*	(주)인쇄***			
7	대덕구 문평동	104-2	콘크리트 포장	T=200mm	83㎡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8	대덕구 문평동	104-2	L형측구		20m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9	대덕구 문평동	104-2	L형옹벽	H=2.0m	28m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10	대덕구 문평동	104-2	블럭담장	H=1.8m	28m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11	대덕구 문평동	104-2	전선케이블		28EA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12	대덕구 문평동	103	콘크리트 포장	T=200mm	24㎡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13	대덕구 문평동	103	출입문		1EA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14	대덕구 문평동	103	블럭담장	H=1.6m	10m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문평동)	해** (주)			

연 번	소재지	지 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사항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5	대덕구 문평동	108-10	콘크 리트 포장	T=200mm	24㎡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16	대덕구 문평동	108-10	블럭 창고		1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17	대덕구 문평동	108-10	계량기		1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18	대덕구 문평동	108-10	상수도		1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19	대덕구 문평동	108-10	우수 받이		3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0	대덕구 문평동	108-10	U 형측 구	300mm×200mm	14m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1	대덕구 문평동	108-10	웬스줄 기초		13m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2	대덕구 문평동	108-10	EG 웬스	H=2.2~2.4m	63m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3	대덕구 문평동	108-10	화확 탱크	(기초포함)	3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4	대덕구 문평동	108-10	콘테 이너	3m×6m	1EA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5	대덕구 문평동	108-10	L 형측 구		1m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	이**			
26	대덕구 문평동	108-7	콘크 리트 포장	T=200mm	3	대전 동구 대전로 68 *-*(인동)	이**			
27	대덕구 문평동	76-4	콘크 리트 포장	T=200mm	12	대전 동구 대전로 68 *-*(인동)	이**			

[붙임 2]

이 의 신 청 서				
편입토지의 표시	위 치			
	면 적	m^2	지 목	
등기부상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의견서 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의견 내용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출 인 (서명 또는 인)</p> <h2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h2>				
구비서류 등	의견서 제출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견서 제출인의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도시계획시설사업(만남어린이공원 조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

1. 주민건의사업의 일환으로 편의·휴양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만남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74-1(만남어린이공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만남어린이공원 조성)
 - 사업의 명칭 : 만남어린이공원 정자 설치사업

3. 사업의 규모

- 공원총면적 : 1,510.2m²
- 사업내용 : 팔각정자 1동 설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만남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중리동 174-1	1,510.2	-	1,510.2	건교부 고시 제315호 (1984.08.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부조서

구,시	동,면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1,510.2	1,510.2					
대덕	중리	174-1	공원	1,510.2	1,510.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 042-608-5134)

9.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공 시 송 달

1. 제 목 : 2017년 9월 수시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29. ~ 2017. 10. 13. (14일간)
3. 서류의 명칭 : 2017년 9월 수시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고지서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내역 참조

위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납기 내에 송달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간주납기일(2017년 10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붙임】 2017년 9월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내역

연 번	납세번호	납세자 번호	납세자명	세목	과세물건	납부세액 (원)	발송지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1	140004-2017-09-2-550-002000	160111-*****	누**비**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017년03월귀속: 근로소득-세무서신고분	2,634,8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 301호 (신탄진동, **빌딩)	고지서 미송달	2017.9.29.	2017.10.31.
2	140004-2017-09-2-570-002010	741221-*****	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016년07월귀속: 사업소득-세무서신고분	395,530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33번길 ***, 102호 (덕암동)	고지서 미송달	2017.9.29.	2017.10.31.